

전라남도 **도보**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023-12호 2023년 2월 28일 (화)

www.jeonnam.go.kr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5681호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82호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83호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84호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85호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86호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87호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88호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89호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90호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91호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92호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93호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94호	전라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95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696호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81호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82호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를 “법 제5조제1항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로, “관리 및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재활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활용센터”를 “자원화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재활용센터”를 “자원화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운영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전의 제3항) 중 “재활용센터의”를 각각 “자원화시설의”로, “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

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83호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지역”이란 전라남도민이 거주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용수”란 섬지역의 가정에서 마시고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물을 말한다.
3.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지역 주민이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생활용수 공급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용수공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섬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공급계획(이하 “생활용수공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활용수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활용수 공급 및 부족 현황
3. 생활용수 공급 시설 현황
4. 생활용수 공급 시설 설치, 개보수 방안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활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시·군의 생활용수 공급 및 시설 현황, 사업추진 방향,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수질 관리
2. 수원지 축조 및 개보수, 안전진단

3.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 관로 설치 및 개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섬지역의 생활용수 공급 및 부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섬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관련 정부 부처, 시·군,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84호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2.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4.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6.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

7. 그 밖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군, 전라남도 경찰청, 전라남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중

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85호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전통종가의 역사문화 유산을 보존·계승 및 활용을 통해서 종가의 역사문화 진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가 역사문화의 보존·계승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종가 역사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종가 역사문화의 보존·계승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사업의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3.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사업 발굴
4. 그 밖에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사업
2. 종가 역사문화 유산의 유지 관리 및 활용사업
3. 종가 역사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 및 행사에 관한 사업
4. 종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5. 종가 역사문화 유산 통합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종가 역사문화를 활용한 창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종가 역사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종가 역사문화 보존 진흥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
3. 종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종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종가의 역사·자료·시설·관광·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4. 전라남도 종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전라남도 종가단체나 전문성이 있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86호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장품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업·제조판매업과 화장품의 용기·포장 등 부자재를 연구·생산하는 산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미용업·미용업에 관한 산업
3. 미용기기 등의 제조·개발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산업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창업, 경영 및 기술 등 지원 방안
3. 화장품산업 홍보 방안
4. 화장품산업 인력양성 방안
5.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품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2. 화장품산업 관련 재료·제품 및 서비스 등의 고급화 사업

3. 화장품산업 브랜드 개발, 박람회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4. 화장품산업의 국내외 정보 교류
5. 화장품산업 인력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화장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는 화장품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2.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3. 소재의 발굴, 지역산업체 기술 및 연구 지원
4. 제조·생산 기술 및 경영 인력 양성 교육
5.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시험생산
6.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7.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장품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87호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 적정성 검토
2. 시설별 주변의 이용사항을 고려한 복구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시·군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검토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검토
5. 그 밖에 본부장이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민안전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계획, 도로, 치수, 방재 등의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의 관련 분야별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 가. 관련 분야의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
 - 나.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다.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전심의 대상 및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검토는 제외한다.

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군수가 발주한 사업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요청) ① 시장·군수가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단계는 설계완료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공사 준공 단계는 준공검사 예정일부터 45일 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관련 분야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해야 한다.

1. 원안채택: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방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방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록)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발언내용
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4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심의요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심의결과 조치) ① 본부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심

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88호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정보제공) 도지사는 국산 밀, 국산 밀가루 또는 국산 밀가공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구성)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나.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 다. 밀가공·유통업 관계자
 - 라. 국산 밀 생산자 단체 대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89호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갈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배출권 상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도지사는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흡수속도 측정과 미

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보호·관리) ① 도지사는 태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시·군,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90호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등록된 전라남도”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를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진흥”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체육진흥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체육진흥 및 지원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3조의2를 제12조의2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5조의2로 한다.

제16조의3을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8조) 제2항 본문 중 “체육단체”를 “전남체육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육단체는”을 “전남체육단체는”으로, “체육단체 간”을 “전남체육단체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4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24조)제1항 중 “체육단체”를 “전남체육단체”로 한다.

제25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25조) 중 “체육단체”를 “전남체육단체”로 한다.

제25조(중전의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육단체”를 각각 “전남체육단체”로 한다.

제26조(중전의 제2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91호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지사가 된다”를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92호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반도체산업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할 때는 자금 조달·기술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연대협력 사업)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업, 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2.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반도체특화단지의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의 지정을 위한 대학 또는 대학원 지원, 반도체 기업의 유치 및 지원
4. 반도체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민원의 신속처리
5. 그 밖에 도지사와 다른 연대협력 당사자가 연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기반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국내외 환경 동향 및 전망
2.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반도체산업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조성 및 지정을 위한 지원 계획, 전문인력 양성방안
5.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 반도체기술 및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반도체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연대협력모델을 위해 다른 연대협력 당사자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2.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관계 조례의 개선 권고
3. 반도체 특화단지의 조성 지원
4.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관련 고충처리
5.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구축 지원
6.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반도체산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2.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지원
3.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반도체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유치·참여·참관 등의 지원

7. 국내·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및 입주기업, 특성화대학에 대한 지원

제9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을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반도체 기업,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입주기관의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투자 소요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입지 지원) 도지사는 산업용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거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용수·전력지원)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반도체 기업,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수 및 전력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세 감면) 도지사는 반도체기업이 반도체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자금지원) 도지사는 반도체기업 육성을 위하여 반도체 관련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출자

제15조(창업지원) ① 도지사는 반도체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① 도지사는 반도체기업의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

진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근로자 지원) 도지사는 반도체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거·복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인력양성지원) 도지사는 반도체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재양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반도체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원) 도지사는 관내 대학 또는 대학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기업·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제22조(민원의 신속처리)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3조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93호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소방대상물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지원대상 소방대상물 소방설비등 현황
3. 소방설비등의 지원 내역 및 예산
4. 그 밖에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지원계획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관계인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설치비용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설비등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받은 관계인을 그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3.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5.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②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지원 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비용 정산)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 적절성
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적절성
3.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적절성
4. 그 밖에 소방시설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소방령 및 해당 소방서 업무 담당 과장
2. 관련학과 교수,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원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심의위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 업무 담당 소방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제4조 관련)

구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 시설	소화 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 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 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기타 설비	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설비	예방 설비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대응 설비	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를 포함한다)
	피난방화설비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 비고

1.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2. 아크·누전·가스차단기는 전기·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가스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3. 화재감시용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4.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5.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6. 포모니터노즐설비는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7.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 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8.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9.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별지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제7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비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화재예방강화 지구 내	대상명	용도
	주소	수용인원
	□ 지구명() / □ 지정일('00.00.00)	
	□ 설치 □ 보수 □ 보강	□ 소방설비
		□ 경보설비 ()
		□ 피난구조설비 ()
		□ 소화용수설비 ()
		□ 소화활동설비 ()
		□ 기타설비 ()
□ 안전설비		□ 예방설비 ()
		□ 대응설비 ()
		□ 피난방화설비 ()
신청금액		설치비용(천원)
	산출근거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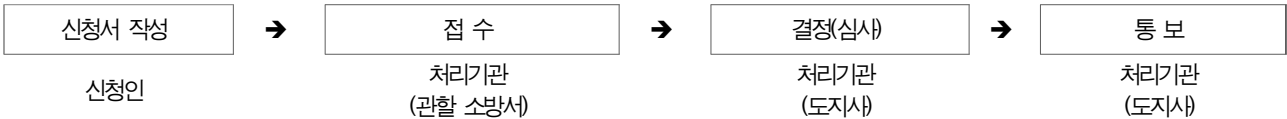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〇〇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별지 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제9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소	대상명	주소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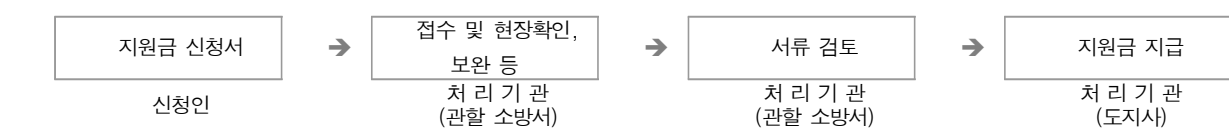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94호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남도립미술관 관람료(제5조 관련)

대 상 자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성 인	1,000원	700원	· 25세 이상 64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및 대학생 군 인 예술인	700원	500원	· 7세 이상 24세 이하 및 대학생 · 하사 이하의 군인 · 예술인 패스카드 소지자
전남도민, 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	관람료의 50%		·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자 · 단체 중복할인 불가

※ 도립미술관 분관은 무료로 한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95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공사채 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준금리로 하되, 연복리를 적용한다”를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시·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및 시·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3. 도 및 시·군이 조합원인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제2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전라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7조제1항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의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1,600cc초과 ~ 2,000cc이하 ②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0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2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2. 자동차의 이전등록(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1,600cc초과 ~ 2,000cc이하 ②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2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3. 기타 허가 및 등록		
가.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허가		점용료부과액의 100분의 5
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① 토지형질변경허가 ② 농지(전·답) ④ 임야·잡종지·초지·과수원 등 기타지목 다. 토석사리 채취허가(하천법)		m ² 당 1,500원 m ² 당 1,500원 내지 3,000원 · 읍면 : m ² 당 1,500원 · 동 : m ² 당 3,000원 점용료의 100분의 5
다. 골프장의 등록		m ² 당 60원
4.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나.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2.5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

※ 공채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채권의 매입면제대상<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주한 원조단체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바. 「민법」·「상법」 외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제사종교자산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한다)

구 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하기 계약 등	가. 자동차의 등록 1)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이전등록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동차대여사업’ 을 등록한 자가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등록 2) 법인합병시의 자동차의 이전등록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함께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하는 보철용 차량 1대의 등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 가)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 나)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

구 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나. 기타 허가 및 등록 1) 농림축산업인 및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농림축산업 또는 수산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다만, 농림축산업인 및 어업인과 농림축산업 및 수산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대체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다. 계약 1) 일반운영바업무추진바자산취득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지자체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를 수탁·대행하는 계약 라. 기타 1)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등록·구매 등 2)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재산의 대체취득시 등록, 안허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을 매입한다.) 3)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을 매입한다.) 4)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2.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696호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를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서명하여야”를 “서명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7조 중 “사실 공표일”을 “사실을 공표한 날”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나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군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을 “(청구인서명부 등의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열람기간”을 “따른 열람기간”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에 심의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원장”을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 나.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 또는 위원”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으로, “경우 위원장”을 “경우에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 제2항 본문 중 “수리여부”를 “수리 여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정기간이 종료 된”을 “제11조에 따른 보정기간이 종료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리여부의”를 “수리여부”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8조) 중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4항”으로, “인터넷”을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으로 한다.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 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필요없음		
주민투표실사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사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참고 자치법규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 3. ○○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생명의땅 으뜸 전남

발행인 전라남도 편집인 대변인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2073